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6. 20.

함 평 군 수



1. 공고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6. 20. ~ 2020. 7. 5.(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가. 소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만일 기한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 대상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량명	소유자			방치장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02두1368	스포티지	도*산업 (주)	134-81-68***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석포로74번길 **_**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2-19부근
KNADE24428S369505	프라이드	민*호	860501-1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제봉로 **-*	

5. 문 의 :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팀(061-320-1753)